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4. 11.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복지문화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달서구청장(아동과장)
- 제출일자: 2024. 11. 6.(수)
- 회부일자: 2024. 11. 6.(수)
- 검토기간: 2024. 11. 7.(목) ~ 11. 14.(목)

## 2. 개정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을 전부개정(2022. 6. 8. 시행)된 사항을 반영하고, 경력단절 예방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변경함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경력활동 촉진 시책의 대상을 “경력단절여성 등”에서 “여성”으로 확대함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
- 상위법령에 따라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5조)

## 4. 검토의견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개정(2021. 12. 7.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경제활동의 중단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 안 제3조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비롯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6조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개정취지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규모 및 경제활동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여성 경력단절 극복과 예방을 위한 적절한 지원정책 마련에 대한 시의성 또한 적절하여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전국 여성 경력단절 규모

(단위: 천명,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5세 -54세 이하 기혼여성(A)	8,844	8,578	8,323	8,103	7,943
비취업여성(B)	3,366	3,420	3,240	3,027	2,837
비취업여성비율(B/A)	38.1	39.9	38.9	37.4	35.7
경력단절여성(C)	1,699	1,506	1,448	1,397	1,349
경력단절여성비율(C/A)	19.2	17.6	17.4	17.2	17

※ 출처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달서구 여성 경제활동 상황(상반기)

(단위: 천명,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	비고
여성 경제활동인구	119	118	120	119	
여성 취업자	115	115	117	115	
경제활동참가율	56.6	57.7	57.8	58.1	
여성	47.2	47.7	48.5	48.9	
남성	66.6	68.2	67.8	67.9	
여성 고용률	45.8	46.3	47.2	47.2	

※ 출처 : 통계청 「시군구/성별 경제활동인구」

# 관계법령

##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직업교육훈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